

case  
6

## 리튬이온 배터리 팩

### 요약

사례명	리튬이온 배터리 팩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9847 (2023.01.10.)
사실관계	배터리 셀(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제조)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한 후, 가압, 경화, 표면 처리, 결합 등의 공정을 거쳐 배터리 팩 제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의 본질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수입된 배터리 셀에 의해 부여되는 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 셀의 기능 및 용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배터리 셀의 제조국이 원산지로 판정됨</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sup>5)</sup>

### 사례명 [리튬이온 배터리 팩]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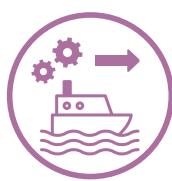
사례번호 NY N329847 (2023.01.10)

#### 사실관계

요청자 Hexagon Purus Systems USA LLC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튬이온 배터리 팩 (부품 번호: 40007000)</li> <li>배터리 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li> </ul> </li> </ul>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구성 요소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튬이온 배터리 셀</li> <li>- 상·하부 하우징</li> <li>- 셀 허더 및 전류 집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각판</li> <li>- 배터리 관리 보드</li> </ul>
- 상부 커버 - 저전압 배선 - 고전압 버스바 - 장착 브래킷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전기 배터리 시스템에서 사용</li> </ul>	

#### 제조공정



01

여러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02

캐나다에서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팩 조립



03

미국 수출

#### 상세공정

- 배터리 셀(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제조)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 캐나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제조
  - 리튬이온 배터리 셀 허더와 전류 집전체에 배치
  - 접착제를 배터리 셀에 도포한 후, 셀을 정렬, 가압, 경화
  - 서미스터(thermistor)를 추가한 후 분진·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정
  - 냉각판에 고정시킨 후, 와이어 본딩 전 거친 표면 형성을 위해 레이저 어블레이션 장비에 통과
  - 배터리 관리 보드, 상·하부 하우징 설치
  - 각 배터리 모듈에 포팅 재료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여러 테스트 수행

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3. 캐나다에서 배터리 팩 제조
  - 배터리 모듈을 금속 프레임에 배치, 전기 하네스를 이용해 배선
  - 냉각 매니폴드 추가, 고전압 버스바 설치
  - 상부 모듈(고전압 커넥터, 퓨즈, 배터리 관리 보드로 구성됨) 설치
  - 상부 커버와 장착 브래킷을 볼트로 고정
4. 완성품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이루어짐(circumstances)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자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자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 관련 법령 및 분석

###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배터리 셀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함께 배치하여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경우, 배터리 셀에 대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3045 (2004.08.09.)* 및 *CBP Ruling HQ 734393 (1992.03.20.)*

###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의 본질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수입된 배터리 셀에 의해 부여되는 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 셀의 기능 및 용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배터리 셀의 제조국이 원산지로 판정됨

## 결론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배터리 셀이 제조된 국가인 중국, 일본 또는 한국임

## II 시사점

- 배터리 셀을 단순히 배터리 팩, 모듈 등으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9847 (2023.01.10.), <https://rulings.cbp.gov/ruling/N329847>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Ruling HQ 563045 (2004.08.09.), <https://rulings.cbp.gov/ruling/563045>
- CBP Ruling HQ 734393 (1992.03.20.), <https://rulings.cbp.gov/ruling/73439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